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86

발의연월일: 2021. 8. 27.

발 의 자:서범수・구자근・김희곤

박덕흠 • 황보승희 • 최형두

이종성 • 전봉민 • 윤주경

권성동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로교통법」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현장 경찰관이 '운전자'에게 통고처분(범칙금 부과)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,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차의 '고용주등'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, 이러한 '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' 제도는 경찰의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과 국민들의 공익신고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.

특히, 최근에는 스마트폰・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기기 보급 확대 및 준법의식 향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, 현행법 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호・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신고 처리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사진,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

입증될 수 있는 유턴·횡단·후진금지 위반,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,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6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조, 제13조제1항·제3항, 제14조제2항"을 "제5조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3조제1항·제3항·제5항, 제14조제2항·제5항"으로, "제17조제3항"을 "제17조제3항, 제18조, 제19조제3항, 제21조제1항·제3항, 제22조"로, "제34조까지, 제39조제4항또는 제60조제1항을"를 "제34조까지, 제37조(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, 제38조제1항, 제39조제1항·제4항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제10호·제11호·제11호의2, 제50조제3항, 제60조제1항·제2항,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0조(과태료) ①・② (생	제160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<u>제5조,</u>	③ <u>제5조,</u>
제13조제1항ㆍ제3항, 제14조제	<u>제6</u> 조제1항·제2항, 제13조제1
<u>2항</u> , 제15조제3항(전용차로 위	<u>항ㆍ제3항ㆍ제5항, 제14조제2</u>
반, 제61조제2항 고속도로 전	<u>항·제5항</u>
용차로에서 준용하는 경우를	
포함한다), <u>제17조제3항</u> , 제23	<u>제17</u> 조제3항 <u>,</u>
조, 제25조제1항・제2항・제5	제18조, 제19조제3항, 제21조
항, 제27조제1항, 제29조제4항	<u>제1항ㆍ제3항, 제22조</u>
·제5항, 제32조부터 <u>제34조까</u>	
지,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	
<u>제1항을</u> 위반한 사실이 사진,	
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	- <u>제34조까지, 제37조(제1항제2</u>
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	호는 제외한다), 제38조제1항,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<u>제39조제1항·제4항, 제48조제</u>
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	<u>1항, 제49조제1항제10호·제11</u>
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	호·제11호의2, 제50조제3항,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<u>제60조제1항·제2항, 제62조</u>
	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
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